

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년 6월 1일

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

##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장애인복지정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장애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고 돌보는 보호자의 경험과 의견이 함께 반영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,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·배우자,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현장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3조제3항제4호)

### 3. 입법예고기간: 2026. 6. 1. ~ 2026. 6. 8. (8일간)

##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26년 6월 8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(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의회사무국 의사팀(전화: 2147-3662, FAX: 2147-3956, e-mail: khjjj@songpa.go.kr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의견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며,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([www.songpa.go.kr](http://www.songpa.go.kr))와 송파구의회의 홈페이지([www.council.songpa.go.kr](http://www.council.songpa.go.kr)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